

# 2023학년도 1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

## 평생교육실습 과목 학습자 안내 사항

1. 모집인원: 선착순 40명

2. 지원 자격: 선수과목 이수 완료자(필수4과목)

구분		과목명
필수		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(4주간)
선택	실천영역 (1과목 이상)	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독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
	방법영역 (1과목 이상)	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상담심리학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

3. 평생교육실습 선정 및 안내사항

- 실습기관 선정기준 : 평생교육사 자격관리(lledu.nile.or.kr)홈페이지 자료실 '실습관련자료'참조

구분	기관유형	예시		
평생 교육법	①유형	국가평생교육진흥원	국가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	대구평생교육진흥원, 경북평생교육진흥원, 경남평생교육진흥원, 평생학습관, 평생학습센터(행복학습센터), 공공도서관, 문화원, 연수원 수련원, 박물관, 복지관 등	
		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)		
	②유형	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	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설치·지정 기관	
		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	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	
	③유형	평생학습도시	시·군·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	
국가·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		광역시도청 / 시·군·구청 / 시도교육청 / 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		
④유형	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	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, 학교평생교육사업 (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, 방과후학교 사업 등) 수행		
⑤유형	평생교육시설 신고·인가 기관	유·초·중·등·대학부설 / 학교형태 / 사내대학형태 / 원격대학형태 / 사업장부설 / 시민사회단체부설 / 언론기관부설 /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		
그 밖의 다른 법령	⑥유형	평생직업교육학원	학원설립 운영등록증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등록 여부확인 (학교교과 교습학원 형태는 인정불가)	
	⑦유형	기관형 교육기관	주민자치기관	시·군·구민회관, 주민자치센터 등
			문화시설기관	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지방문화원 등
			아동관련시설	아동직업훈련시설, 아동복지관, 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
			여성관련시설	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(복지, 문화)회관 등
			청소년관련시설	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문화의집 등
			노인관련시설	노인교실, 노인복지(회)관 등
			장애인관련시설	장애유형별 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
	다문화가족관련 시설	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		
	⑧유형	훈련· 연수형 교육기관	사회복지시설	종합사회복지관 등
			직업훈련기관	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기관 등
	⑨유형	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	연수기관	공무원연수기관, 일반연수기관 등
비영리민간단체			전국문해·성인기초교육협의회, 한국평생교육학회 등	
비영리 사(재)단법인			한국평생교육사협회, 한국문해교육협회 등	
청소년단체			한국청소년연맹, 청소년단체협의회 등	
여성단체			여성회, 여성단체협의회 등	
노인단체			대한노인회, 전국노인평생교육, 단체연합회 등	
시민단체	NGO, YMCA, YWCA, 환경운동연합 등			
기타		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		

- 기관 선정은 학습자가 직접 알아보셔야 하며 실습기관의 지도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  
**개강 전 미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- 코로나19로 인해 총160시간 중 50%이내의 범위내에서 원격 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 운영 가능 (교육부 별도 공지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실습기간 및 시간 (정해진 기간 외에는 실습이 불가능합니다.)
  - \* 실습은 담당교수의 첫 수업 이후 가능(개강 수업 전 실습은 인정 불가능)
  - 2023. 03. 05.(일) - 5. 31.(수) 이내에만 실습가능 / 총160시간(20일 이상)
  - 3월 6일(월) 실습 시작하실 분은 실습신청서를 3월 2일(목)까지 제출하셔야 실습이 가능합니다.
- 실습 가능 지역 : 대구, 경북, 경남 (그 외 지역은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- 실습 유의 사항
  - 실습 가능 지역은 본 원(대구대 평생교육원)에서 제한한 것이므로 거주지역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
  - 근무지 내 실습 가능(행정실로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)
  - 출석 수업일에 실습은 불가능합니다.(비대면 수업일 경우에도 동일)
  - 주말에 실습하실 분은 실습지도자가 주말에 근무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선착순이더라도 본원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불일치 시 선발하지 않으며 선발 이후에도 실습기관 지역 제한 등 자격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.
 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시 자료 배부합니다.

4. **평생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개강일에 실시(예정) :**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기타 문서 서식과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 
(평생교육원 홈페이지 → 학점은행제 → 서식자료실 참고)

5. 실습과목만 수강하시는 학습자분들께서는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업무를 따로 도와드리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기간 및 방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
6. 본 원의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일은 3월 4일(토)이며, 강의실(대면)수업 5회 진행됩니다.  
(\* 강의실 수업 2회 결석 시 자동탈락되며,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함)

7. 학습비(수업료) 환불은 개강 전 100%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[별표]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.

[별표]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반환 사유	반환 사유 발생 시점	반환 금액
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		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	수업 시작일 전일까지	학습비 전액
	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	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	반환하지 않음

- 수업료 환불은 실습 시작과 관계없이 수업 시작 후부터 적용됩니다.
- 개강 전까지 실습기관을 정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셔서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